



종합청렴도(청렴노력도) 보고서

- 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·확산 -

2025. 6.

한국생산기술연구원

임직원의 대외활동 관리체계 개선

I.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□ 대외 감사 지적 등에 따른 대외활동 신고 등 관리체계 개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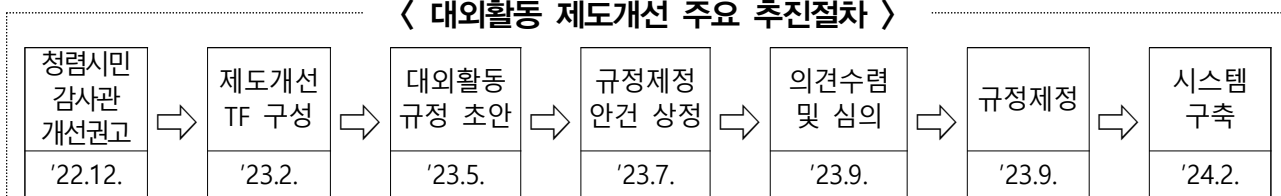
- (추진배경) 지속적인 임직원의 대외활동 미신고에 따른 대외감사 지적 사례* 발생 등 기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 시급
 - * '20.11월 자체감사, '21.6월 국무조정실, '22.5월 감사원, '23.11월 NST감사위원회
 - 원칙적으로 금지된 영리활동* 또는 개인 지급된 사례금 발생 시 반드시 신고의무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 후 활동 필요
 - *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,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
- (현황 및 문제점) 연구원 대외활동 관리체계 밖의 대외활동*이 다수 존재하여 기관 차원의 관리·통제 부재(감사원 주요 지적사항)
 - * 서면자문·평가심사, 저술·번역, 시험감독, 논문심사, 기술동향보고서, 기술지도 등
 - 기존 '외부강의등' 외 신고체계가 없어 무분별한 대외활동* 가능성
 - * 미신고 또는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체와 거래 등 이해충돌 가능성 존재
- (필요성) 대외활동 관리규정 제정 및 통합 신고채널 구축하여 여러 형태의 대외활동 양성화에 따른 관리강화 및 미신고 발생 사전방지

II. 주요 추진내용

□ 추진절차

- R&D 기획 및 기업지원 등의 대외활동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바람직한 대외활동 통합관리 체계 마련

〈 대외활동 제도개선 주요 추진절차 〉



□ 추진 세부내용

○ 대외활동 제도개선 TF 구성·운영('23.2.~7.)

- 대외활동 부서별 제도개선 세부계획(안)을 수립하고 규정 제·개정 및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위한 TF 구성(소관 부서장 및 실무자 10명)

활동구분	타업, 겸직	외부강의등, 기타	외부과제 인건비	기술자문.이전
담당부서	인재경영실	총무보안실	사업운영평가실	기술사업화실

○ 의견수렴 위한 회의체 안건 검토 및 규정 제정('23.8.~'23.9.)

- 원내 이슈협의회 등 수요자(연구직) 의견반영 및 규정 제정 추진
-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으로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사용자 편의 증대

○ 수요자(연구직) 눈높이에서 대외활동 신고시스템 홍보활동('23.9.~'24.7.)

-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세부적 보완을 통한 신고 시스템 구축
- 신고절차 및 FAQ, 교육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, 지역별 설명회(4회)

〈 대외활동 제도개선 주요 추진내용 〉

활동유형 세분화	주관부서지정 및 기준 마련	의견수렴을 통한 규정 제정 및 신고시스템 구축
• 겸직, 타업종사, 외부강의등, 서면심사, 집필활동 등 • 활동유형으로 구분하여 세분화 및 정의의 명확화	• 체계적 관리를 위한 주관 부서 지정 및 신고절차 정립 • 상한액 및 횟수 제한, 위반자 제재기준 마련	•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신고기준 보완 및 규정 제정 • 신고시스템 구축, 지역별 설명회 추진

Ⅲ. 추진과정 중 장애요인 극복방안

□ 장애요인

○ 대외활동 유형에 따른 구분기준 및 상한 횟수, 금액 의견 상이

⇒ 평가활동이 많은 유사기관 대외활동 기준 참고 및 TF 회의 시 의견수렴으로 적정 상한 횟수(연간 37회), 금액(회당 60만원) 결정

○ 전자 신고시스템 구축 전 발생하는 대외활동 신고채널 운영

⇒ 대외활동 신고 임시운영계획 수립하여 내부공문 형태로 신고서 첨부 및 부서장 승인으로 한시적 신고절차 마련하여 혼선 최소화

○ 신규 도입에 따른 규정 및 신고체계에 대한 낮은 이해도

⇒ ①대외활동 쟁점사항, ②유형 및 신고절차, ③대외활동 FAQ, ④온라인 교육영상 제작·배포, ⑤지역별 설명회(4회)로 이해도 제고

IV. 주요 추진성과

☐ 대외활동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

○ 월별, 연간 활동 횟수 및 사례금 제한 등 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과도한 대외활동을 제한하고, 암암리에 이뤄진 대외활동 양성화

☐ 활동 유형별 신고 기준 정립을 통한 부패행위 선제적 예방

○ 미신고, 초과사례금 수령, 기업(산업체) 자문으로 인한 이해충돌 등 부패행위 가능성 등 사전 차단 및 제도권 내 구성원 보호

☐ 대외활동 감사사례 교육을 통한 신고 이행 및 대외 감사 대응

○ 대외활동에 대한 대내외 감사사례를 전파하여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, 증빙(의뢰공문), 초과사례금 수령 시 처리절차 등 안내

V. 우수사례 선정 사유

☐ 대외활동 신고에 대한 관리·통제 체계가 미흡한 기관의 경우 취약분야로 선정하여 제도개선 추천

✓ 해당 사례가 '22년도~'24년도 권익위에 제출한 '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'에 해당 여부	예 ■	아니오 □	
✓ 과제 제출 년도 * ('22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⑤번, ('23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, ('24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	'22년 □	'23년 ■	'24년 □
✓ '22~24년도 미평가기관에 해당(자율과제 제출)	예 ■	아니오 □	